

1. 종사자 안전건의 제도(ECP)



정 의

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안전 위해 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을 운영개선통지, 전화, FAX,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하는 제도



배경

고리1호기 소내정전(SBO) 은폐사건 ('12. 2)



안전중시 업무환경(SCWE)*조성을 위해 **종사자 안전건의 제도(ECP)**** 운영







※ SCWE(Safety Concious Work Environment) : 직원들이 자유롭게 안전 문제점을 도출·보고하는 업무환경으로 건전한 안전문화의 필수요소 ECP(Employee Concerns Program) : 종사자 안전건의 제도

1. 종사자 안전건의 제도(ECP)

대 상

- **적용 대상** : 원자력 발전소 전 종사자 (협력사 직원 포함)
- 건의 대상 : 원자력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
 - * 원자력안전, 운전, 정비, 방사선, 화학, 환경, 보안 등
 - * 개인 고충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은 제외

건의방법

- 운영개선 통지(CAP) 발행
 - 공 개 : 각 사업소로 발행
 - 비공개 : 본사 안전처로 발행 [기능위치 : 1339]
- 전용전화 · FAX · 전자우편 · 건의함을 통한 비공개 건의(비밀보장)
 - 전용전화: 054) 704-1588 (사선 0800-1588)
 - FAX : 054) 704-1589 (사선 0800-1589)
 - 전자우편 : khnpecp@khnp.co.kr
 - 현장 건의함 : 건의함 수거 후 ECP 담당자가 통지 발행 (주기 : 월)

2. 건의자 비밀보장 및 보호규정

>>>

비밀보장

- ECP담당자 및 ECP운영개선위원회 위원은 비밀준수 서약서 작성
- 위반 시 사내·외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벌

>>>

관련 법규 및 규정

구분	내용		
관련 법령	•	원자력안전법 ◈ 보고/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· 의무 · 벌칙 등	
	-	공익신고자 보호법 ◈ 보고/공익신고에 대한 보호ㆍ의무ㆍ벌칙 등	
	•	규제기관 안전문화 이행을 위한 구성요소 ◈ SCWE 조성을 위한 종사자 보호	
	•	국내 원전 성능목표 및 기준(K-PO&C) 令 종사자/관리자, 운전원/정비원 기본수칙	
절차/ 지침	•	종사자 안전건의 제도(표준안전-1078B) ◈ ECP 건의자 보호 및 ECP 처리자 의무규정	
	•	원자력 안전문화 증진 및 평가(표준안전-1078A) ◈ 계층별 안전문제 제기/보고 책임	
	•	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�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·의무 등	
행동 규범	•	원자력 안전문화 원칙/속성 및 행동규범 ◈ 안전중시/안전건의에 대한 계층별 행동규범	

1 원자력안전법

- [보호] <u>제102조(종업원에 대한 보호)</u>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 - ☞ 운영기술지침서, 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/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 또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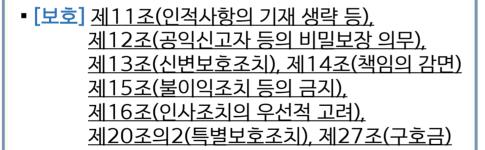


• [벌칙] <u>제118조(벌칙)</u> 제102조 위반시

300만원 이하의 벌금

2 공익신고자 보호법

■ [의무] 제7조(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)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* 발견시 조사기관,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



- [벌칙] <u>제30조(벌칙)</u>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/신고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- [벌칙] <u>제30조2(양벌규정)</u> 제31조(과태료)

- * 공익침해행위 :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[근거 : 제 2조(정의)]
 - ① 별표에 규정된 법률(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, 원자력안전법 등)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, ②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치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- 3 규제기관 안전문화 이행을 위한 구성요소
 - 안전중시 업무환경 분야
 - 8) 종사자 보호 : (원전 운영자는) 자유롭게 안전문제를 제기할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고 문제 제기로 불이익을 주거나 조직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4 국내원전 성능목표 및 기준(K-PO&C)
 - 1장안 전
 - 제1절 원자력 안전문화 ◈ ECP 적극활용, 조직내 신뢰와 존중을 통한 안전중시 업무환경 조성
 - 제2절 조직 ◈ 사소한 위험요인도 보고·개선/종사자 의견 적극청취/문제제기 및 해결책 이행 권한보유
 - 제3절 성과개선(관리자,리더십) ◈ 결함, 아차사례, 전조사건 인지시 즉시 보고
 - 제6절 산업안전·화재방호(산업안전) ◈ 동료 작업자의 표준이해 행위·조건 확인시 시정조치

- 4 국내원전 성능목표 및 기준(K-PO&C)
 - 2장운 전
 - 제1절 운전원 기본수칙 ◈ 주제어실 운전원의 부적절한 조치 및 예상되는 조치 미이행시 의문제기
 - ♦ 발전팀장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화 조성
 - 세2절 운전관리 ◈ 운전원은 경미한사항도 문제시하는 엄격한 기준 준수
 - ◈ 종사자는 주요설비의 경미한 문제도 보고

- 3장기 술
 - 제1절 정비 기본수칙 ◈ 정비, 문제해결, 예방정비 중 비정상상황 발생시 정비 주관부서 보고
 - ◈ 예상치 못한 결과 발생시 작업중단 후 정비 주관부서 보고
- 6장 방사능 방재
 - 제1절 방사능 방재 ◈ (관리자 리더십) 관리자는 비상대응 관련 문제점 신속히 보고
 - ♦ (비상 대응) 비정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시값 확인시 즉각 보고

5 원자력 안전문화 관련 표준절차서

구분	종사자 안전건의 제도(표준안전-1078B)	원자력 안전문화 증진 및 평가(표준안전-1078A)
책 임	5.1 ECP 운영개선위원회 위원장	5.2 발전소 소·실장(협력사 소장 포함) ◈ ECP를 포함한 안전 위해요소 신고· 건의/보고사항 적극 처리 5.3 관리자 및 감독자(협력사 포함) ◈ 직원들과 다음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강조 5.4 직원(협력회사 포함) 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안전 위해요소 신고 및 보고
보호	6.1 문제점 제기에 대한 조직내 차별적,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운영한다.7.2 익명성 보장	

6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

이의무

제3조(회사의 책무)

- ♦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· 지원을 위해 노력
- ♦ 공익신고 접수 · 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· 지원을 위해 예산/인력확보 위해 노력
- ◈ 단체협약, 고용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 금지

제7조(신고의무)

♦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공익침해행위 인지시 지체없이 신고

○ 보호

제23조(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), 제24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, 제25조(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), 제26조(징계의 감면), 제26조의2(불리한 처분의 감면), 제27조(공익신고자 보호), 제28조(보상금 지급신청 안내), 제28조의3(구조금 지급신청 안내) 등

- 7 원자력 안전문화 원칙/속성 및 행동규범
- **원칙 9** ○ 안전에 관한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안전중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.

속성 9-1	(안전중시업무환경 정책)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/책임을 지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.				
	1직급	◦ 안전에 관한 우려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			
		◦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직원을 존중하고 적시에 피드백 제공			
		◦ 모든 보복피해 조사 / 위축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 적시 시행			
행동		◦ 안전 중시 작업환경 조성 및 유지 위한 방침 수립 및 강화			
규범	1,2,3	○ 직원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할 권리와 책임 강조			
	직급	○ 간부들은 적시에 우려를 처리하며, 필요시 비공개로 처리			
		○ 우려 제기를 가로막는 행동시 법과 정책을 위반함을 교육받음			
	1,2,3,4 직급	◦ 보복의 두려움 없이 안전에 관한 우려를 자유롭게 제기			

- 7 원자력 안전문화 원칙/속성 및 행동규범
- **원칙 9** ○ 안전에 관한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안전중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.

속성 9-2	(안전건의 프로세스) 안전에 관한 우려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			
	1직급	관리 체계의 영향력 밖에서 운영되는 우려제기 또는 다른 전문가적 의견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		
	178	익명으로 우려를 제기하는 방법을 포함한 대안 프로세스가 독립성을 갖고, 우려가 적시에 처리되도록 보장		
행동	2직급	○ 우려 대응에 배정된 직원들이 적절한 역량 보유하도록 함		
규범	2,3직급	○ 직원들이 적시에 피드백을 받도록 함		
	1,2,3 직급	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 프로세스를 마련, 지원, 촉진하여 시정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 		
	- ម៉ាម	◦ 우려제기 대안 프로세스를 지원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음		
	4직급	◦ 직원들은 이슈가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짐		

4. 원전안전 제기/건의 신고채널

	구 분	내 용	접속방법	비고
국민 권익위	국민신문고	부패 · 공익신고 등	▶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(www.epeople.go.kr) ▶ 전화(1398, 110)	
원안위	원자력안전 옴부즈만	원자력안전 관련 비리, 불합리한 업무관행, 법령 위배행위 등	▶ 전화(1899-3416) ▶ 팩스(02-397-7368) ▶ 이메일(<u>ombudsman@nssc.go.kr</u>)	직원, 외부인
안전처	종사자 안전 건의제도(ECP)	원전 안전위해 요소 및 개선필요사항 등	► 전화/팩스(054-704-1588/1589) ► 이메일(khnpecp@khnp.co.kr) ► 운영개선프로그램(CAP) 통지	직원, 외부인
감사실	내부신고센터(기명) 내부신고센터(익명)	부정행위, 행동강령 위반 등	업무포털 하단배너	직원
	한수원 신문고	부패행위, 예산낭비, 갑의 부당행위, <u>공익신고</u> 등	사외홈페이지 배너(<u>www.khnp.co.kr</u>)	직원, 외부인
	레드휘슬 24시간 신고전화			
			레드휘슬 홈페이지(<u>www.redwhistle.org</u>)	
			054-704-1999	

